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 지정제도 운영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지정, 증서를 교부하고 선주, 선원이 능동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솔선수범 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범선박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선박은 총톤수 400톤 이상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중 3년간 해양오염 위반사실이 없고 출입검사를 3년이내 3회 이상 받은 선박에 한하여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에서 선주의 신청서를 받아 정밀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후 해양경찰청장이 교부하는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 증서를 받음으로 지정 받게 된다.

9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여 올해에 총 20척이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지정 받았으며,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지정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출입검사를 완화하여 임의적인 선박출입검사가 생략되며, 년 1회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출입검사를 받을 수 있어 선박운용상의 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輕減혜택도 받게 된다.

참고

모범선박(GREEN SHIP)지정 세부점검표

1. 해양오염방지장치 세부점검항목

1) 분뇨처리장치 (5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5	3	2	0

- 취급설명서 부착여부
- 가동상태 및 작동요령 확인

2) 기름 필터링 장치 (3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3	2	1	0

- 운전 및 정비기록상태

3) 소각기 (5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5	3	2	0

- 운전기록(기름기록부 및 폐기물 기록부의 내용 점검)
- 정비 기록

4) 폐유, 슬러지를 위한 보조장치 (5점)

모두 설치	2가지 설치	1가지 설치	모두 없을 경우
5	4	3	0

- 전처리 장치, 유화장치, 유수분리기 설치시

2. 해양환경보정을 위한 선원 참여도

1) 기름기록부 (10점)

① 기록상태(7점)

90~100% 완벽할 경우	90~70%	70~60%	60%이하
7	5	3	1

-선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장치 가동 여부 확인 점 수부여

② 보관상태(3점)

-3년 이상 보관시 점수부여

2) 발생량 (5점)

100~90%	90~70%	70~60%	60% 이하
5	3	2	1

-최종 검사일 기준 1년내 폐유, 슬러지 및 BILGE 등의 발생량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여부를 각종 제출자료 등으로 평가한다.

3) 폐유 및 슬러지의 처리실적 (기름기록부 및 자료로 평가, 15점)

100~90%	90~70%	70~60%	60% 이하
15	12	10	8

-최근 3년간 폐유 및 슬러지의 적정 처리한 실적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처리라 함은 본선의 처리와 수용시설의 처리를 말하며 본선의 경우는 소각기의 운전을 합리적으로 하였는가이며, 수용시설의 경우는 처리 실적을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름 이송절차 (5점)

계시 및 시행	시행	계시
5	3	1

-본선의 각종 기름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이송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대형선에서 자동이송 관계는 기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코드(1)항으로 기타 사유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밸브 조작방법 및 요령계시 여부

5)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른 교육, 훈련 및 정보 (5점)

정기적 교육훈련	교육자료 작성	비상계획 비치
5	3	1

-비상계획 검인비치 상태 및 변경사항 확인
 -비상계획에 따른 개인별 임무 숙지확인
 -교육훈련 실적(1년에 5회이상 교육시 최고점수)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지침서 비치대상선박은 기름 오염비상계획 대상선박에 준하여 평점

6) 선박선령의 기준 (5점)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5	3	2

- 국적 증서 확인

7) 폐기물관리 (10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10	8	5	0

-MARPOL ANNEX V.REGULATION 부록 1(시행지침)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 수집 및 처리와 기록의 유지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실적을 평가

① 폐기물 기록부(5점)

· 생성폐기물/정비폐기물 등의 발생기록이 명확히 되어있는가?
 · 특히, plastic/vinyl 등의 수집, 저장, 처리, 관리 확인

②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 SYSTEM)

이 계획, 시행, 결과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5점)

8) 기관 구역의 세제사용 (5점)

전혀 안함	일부 사용	사용함	비고
5	3	2	

9) 오염방제자재의 비치현황 (법정수량 이상, 5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5	3	2	0

-오염발생시 보고체계, 본선방제방법, 장비의 수 등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운송선박인 TANKER의 경우 SOPEP에 의한 SYSTEM을 확인한다.

10) 회사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투자 및 관심도 (5점)

매우 높음	높음	미흡	관심 없음
5	3	2	0

- 폐유 처리 또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개선등 참조

11) 법적 비치서류 확인사항 (3점)

- 오염방지증서(IOPP/OPP 증서)
- 기름기록부
- 폐기물기록부
- 유해액체물질기록부

12) 유해액체 물질의 저장 및 처리 (3점)

매우 잘 운영함	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3	2	1	0

-본선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보일러 청관제, 필터 소제용 화공약품등 유해 하거나 위해한 화공약품등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의한 작업 및 안전에 관한 내용등이 게시되고 시행되는 것을 확인한다.

13) 선원의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보존 의식도 (6점)

매우 높음	높음	미흡	관심 없음
6	4	2	1

▶ 세부점검항목 평가종합점수 70점이상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승인요청

■ 고시 ■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 규정

제정 1997. 12 . 26

해양경찰청 고시 제1997-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 19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이하“비상계획”이라 한다)의 검인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 지정등) 법 제 28조 및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획검인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7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및 한국어선협회(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가 대행토록 한다.

제3조(비상계획의 검인) ①대행기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로부터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계획의 검인 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비상계획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하고 비상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비상계획서에 규칙 별표 7에 의한 검인 표시를하여 시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비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계획 비치 여부 점검등) ①법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은 비치대상 선박에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이 검인받은 비상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당해 선박이 비상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비상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